

# AI KOREA 2020 전시회 참가신청서

AI KOREA 사무국 : 051-740-7545 | Email : aikorea@bexco.co.kr  
 홈페이지 : [www.aibusan.kr](http://www.aibusan.kr)

## 1. 참가기업 및 전시품목

구 분		회 사 정 보			
회 사 명		(국문)	(영문)		
대표자명		(국문)	(영문)		
주 소		(우편발송용 주소)			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 (사무실)
	이메일				휴대폰
품 목					

## 2. 참가 신청

구 분		신 청 내 역	단 가	금 액
종류	크기			
독립 부스	1부스 (3m X 3m)	부스	700,000 원/부스	원
조립 부스		부스	1,000,000 원/부스	원
할 인 금 액				원
소 계				원
부가세 10%				원
합 계				원

### 가. 신청 안내

신청방법	<input type="radio"/> 참가신청서 및 제안사항 작성 <input type="radio"/> <b>사업자 등록증 사본 포함 Email 송부</b> <input type="radio"/> 사무국에서 인보이스 발행, 인보이스 발행 2주 내 참가비 납부		
납부계좌	부산은행 101-2068-6999-00	신청서 제출처	aikorea@bexco.co.kr
세금계산서 유형	<input type="checkbox"/> 청구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영수세금계산서		

### 나. 부스 형태별 제공 내역

구분	조립부스	독립부스
면적	3m X 3m X 높이 2.4m ※ 시공 및 비품 제공	3m X 3m ※ 전시공간만 제공 ※ 최소 신청 규모 : 4부스 이상
제공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 형태(바닥 카펫, 벽체, 상호간판, 기본조명)</li> <li>- 1부스 당 전기 1KW (2구 콘센트 포함)</li> <li>- 인포메이션 데스크 1세트 (의자 2개 포함)</li> <li>- 라운드 테이블 1세트 (의자 2개 포함)</li> <li>※ 라운드테이블 세트는 부스 개수 관계없이 1업체 당 1세트 지급</li> </ul>	참가업체가 벅스코에 등록된 지정 부스 장치 업체를 통해 시공  ※ 지정등록업체 리스트 <a href="#">벅스코 홈페이지</a> 참조

### 3. 부대시설 비용

(부가세 별도)

구분		단가	구분		단가
전기	단상 220V(60Hz)	70,000원/KW (주간만 공급)	압축공기	250,000원/개소	
	삼상 380V(60Hz)		급배수	250,000원/개소	
	24시간용(220V/380V)	80,000원/KW (24시간 공급)	LAN(유선 인터넷 연결)	150,000원/PORT	

※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 양식은 추후 제공 예정이오니 비용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에 따른 참가규정 및 정보 활용 동의>

- 행사 참가 규정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함을 동의합니다.
- 신청서의 정보는 AI KOREA 2020의 운영과 마케팅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 <전시회 참가규정>

## 제1조 용어의 정의

-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사업자(개인,법인),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 '전시회'라 함은 AI EXPO BUSAN 2020를 말한다.
- '주관자'라 함은 전시회를 주관하는 "벡스코"를 말한다.

## 제2조 참가신청

- 전시회 참가 신청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한다.
- 전시자는 참가 신청 후 2주 이내 참가비 총액의 50%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이미 신청한 부스 및 부대시설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제3조 참가비 납입

- 기본 참가비는 독립부스일 경우 부스당 700,000원으로 하고 조립 부스일 경우 부스당 1,000,000원으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시 참가비총액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2020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전시자가 부스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 전시회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시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 제4조 참가비 내역

- 참가비에는 전시장소, 전시회 진행, 홍보, 전시장 보안 및 경호 등이 포함된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 제5조 전시부스 배정

- 주관자는 신청규모, 전시품목, 계약금 입금순 및 참가신청 접수순, 국적 등 합리적인 방법과 주관자의 전시회 전체 기획 방향에 의거 전시면적 및 위치를 배정하고,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관자는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 할당된 전시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6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관측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제7조 주관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관자가 부스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부스 설치 등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 전시부스 관리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고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시자는 전시부스 내 바닥, 천장, 벽면 등에 페인트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전시면적을 벗어날 수 없다.

## 제9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 설치 및 철거기간동안 모든 자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주관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전시부스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 위험부보

전시자는 전시기간, 설치 및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정부스 면적 내의 전시품 및 장치물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관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1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2조 참가취소(해약)

-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전시자가 전시 계약을 취소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 사무국에 서면으로 취(축)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에서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기 납입된 참가비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한다. 모든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 마감기한(2020년 7월 31일)까지 취소 시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마감기한(2020년 7월 31일)이후 취소 시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제13조 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대한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된다.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벡스코의 제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동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